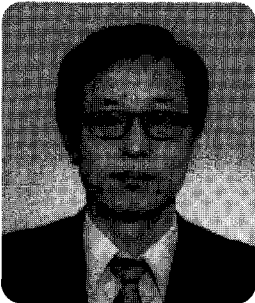


기술개발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5)

- 과학기술개발정책에 있어서 특허제도의 활용 -



이 재 성
〈특허청 행정사무관〉

〈전호에 이어 계속〉

다. 기업부설 연구소에서의 특허제도 활용

(1) 문제점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체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97. 12월 현재 3,000여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등을 수혜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소의 특허출원·등록현황이나 자료이용 실적을 보면 정말 기술개발을 위해서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는지 의아심을 가질 만큼 특허제도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그지없다.

조세지원의 예를들면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수혜를 받는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 준비금 '96년 13,219억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3,202억원 680개 기업이 수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특허출원은 100대기업이 9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기업이 연구개발을 한다고 세제 및 금융혜택을 받고서 연구개발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96년말 특허전담부서 설치업체 수가 900여개사에 불과하고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채택한 기업이 440개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연구개발에 있

목 차

- I. 머리말
- II. 우리나라 기술개발 활동
- III. 기술개발지원 주요시책
- IV. 기술개발 지원제도로써 특허제도
-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 VI. 맺음말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어 특허제도의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르게 말하면 97년 말 3,000개소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 10%정도의 연구소만이 연구개발에 특허제도를 활용하고 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대부분의 연구소는 기술개발을 이유로,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부의 조세등 각종 지원제도를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개선방안

위와 같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조세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에서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합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시:

- 당해 기술분야의 특허제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특허청의 확인을 받도록 할 것
- 조치사항:과학기술처 고시 제1994-16호 제4조 제1항의 첨부서류에 “당해 기술분야의 특허지도를 삽입.

②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시:

- 조치사항:과학기술처 고시 제1994-16호 제6조(보고)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매년 보고서에 특허청의 의견서를 첨부도록 함.

③ 기업부설연구소의 특허관리 부실 운영에 대한 제제

라. 특허조사제도 도입

(1) 의의

특허조사제도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

지만 일반적으로 특허청이 특허출원한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련 있는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심사관의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출원인에게 자신이 출원한 해당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어느 정도인가를 추측케 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발명, 보다나은 발명을 유도하는 특허기술정보로 활용케하여 기술발전을 도모하게 하며 특허청에 있어서는 심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특허조사제도의 장점

(가) 최신 국제특허기술정보의 활용

선행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국내·외 특허정보를 국내 습득기술로 활용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나) 자신의 발명에 대한 평가자료

조사제도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출원계속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 특허권 획득을 위한 무모한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발명가의 장미빛 환상을 조기에 제거하여 보다 나은 연구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발명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다) 심사부담의 경감

자료조사업무라는 사실업무와 심사라고 하는 판단업무를 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심사의 질 향상과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결어

PCT, EPO 독일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조사제도를 철저히 검토한 뒤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산업계·연구계등에 제공하게 되면 기술개발

관련 각종 정책과 연계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특허조사제도는 기술개발 주요시책에 특허제도를 활용하는데 기본적 토대이기 때문에 이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된다. 특허조사방법이 일반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전문화된 특허청이 특허조사제도를 정보제공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기술개발촉진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현행 제도로는 특허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선행기술자료조사제도와 민원인이 특허기술정보센터에 의뢰하여 특허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심사관의 심사편의를 위한 제도이고 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출원인 또는 민원인의 편의와 심사관의 심사경감 어느 일면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특허조사제도는 1회의 조사로 양측, 즉 출원인(민원인)의 정보획득과 심사관의 업무효율에 기하는 것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 기술도입시 기술조사서 첨부 의무화

(1) 문제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국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즉 기술모방을 통한 성장전략이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95년도 기술도입 대가 지급액은 19억 5천만 달러, 96년도 23억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술도입시에는 특허권과 연결되어 도입하고 있는지? 중복도입은 없는지? 낙후기술은 아닌지? 정작 우리가 부족한 기술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한국산업은행의 『기술도입과 효과분석』에 의하면 '62~90사이에 국내 821개 기업이 1,749개 기술도입을 했는데 이중 중복도입비율이 55%이고

개발된지 5년 이상된 기술의 비율이 74%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기술도입을 함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아 외화를 낭비한 것이라 생각된다. 단 몇일간의 특허자료만 조사했어도 아까운 외화가 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2)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도입계약체결신고서를 받도록 하고 이 계약에 특허기술자료조사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조사서는 특허청의 검토에 따라야 한다.

기술도입신고제도는 규제적 측면에 있어서 자유화 조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중복기술, 진부기술을 도입하는 어리석음을 방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한국내에 있는 세계의 특허자료를 근거로 습득 기술을 쌓은 다음에 꼭 필요한 기술을 적당한 가격에 도입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술도입시 기업이 먼저 한국에 있는 특허자료조사를 하고 특허청이 검토한 뒤 계약체결을 신고토록 하여야 진부기술, 중복기술도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허청이 검토할 때는 앞에서 언급한 특허조사제도가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도입과 관련한 부서를 특허청에 설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더욱 좋을것이라 생각된다.

바. 대학, 대학원에서의 특허제도 활용

(1) 문제점

95년말 우리나라 전체 연구원수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128,315명인데 이중 대학은 연구원은 44,683명으로 총 연구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 연구원을 학위별로 보면 박사가 27,073명, 석사 16,506명, 학사 897명, 기타 207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 박사급 연구원의 77.1%가 재직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기초연구의 활성화가 창조적인 기술개발의 중요한 열쇠임을 알 수 있다.

95년도 한해에 대학에 투자된 총 연구개발투자액을 살펴보면 94년의 6,089억원에 비해 26.6%가 증가한 7,709억원으로 국내 전체연구개발비의 8.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연구실적은 기초연구논문 발표로만 측정되고 특허제도로 활용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

(2) 개선방안

대학의 연구원들에게 특허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면 어떤가 생각해 본다. 대학의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해당분야의 특허지도를 작성하면 좋겠으나 그 어디에서도 배우지 아니하였던 특허제도나 특허지도 작성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특허지도 작성을 하나의 논문으로 평가해주는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3년마다 당해 연구분야의 특허지도 작성을 하나의 연구논문으로 인정해 주면 자발적으로 특허 인식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고 발명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공계 석, 박사학위 논문제출시 당해 기술분야의 특허지도를 첨부하도록 한다면 특허인식제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후일 이들이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에 유용한 지식이 되리라 생각된다.

(3) 효과

기술개발에 있어 특허지도의 작성으로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각종 정부지원이 실질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 특허지도의 작성으로 정부의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악용하는것을 방지하여 정당한 연구개발비 인증효과를 가져오고,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며, 부실연구·중복연구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국제적인 기술의 흐름을 기업으로 하여금 기초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기술개발의 질적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발명진흥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고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 특허자료 열람실의 확충

매년 150만건 이상의 외국특허자료가 입수되고 5,000만건 이상의 특허자료가 특허청에 있다.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라면 특허기술자료의 이용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그와 함께 특허제도의 2가지 기능은 발명의 보호와 그 발명의 이용이다.

그 특허발명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해야하는 특허청이 특허자료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발명을 보호하는 기능은 출원과에서부터 심사 1, 2, 3, 4국 심판소, 등록과에 이르기까지 이나 발명의 이용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정보자료국, 자료과에 지나지 않는다. 출원과 청구에서 안내하는 직원은 대부분 정규직원이지만 특허발명의 이용자부서인 열람실창구는 진흥회 직원이나 일용직, 기능직이 대부분이고 정규직원은 고작 2~3인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정보자료는 신 기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일반 문헌에서 얻을 수 없는 기술분야, 제품화 되지 않는 분야의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표준화되어 정리된 기술정보로서 수집·조사·활용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비전문적인 직원의 배치와 자료의 홍보부족 및 그로인한

인식부족으로 자료량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총 자료의 1% 미만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출원인 중심, 즉 발명의 보호를 강조해야 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발명의 이용자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자료 이용자도 크게보면 예비 출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제도의 두 축 중의 하나인 발명의 이용자, 특허자료 이용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인이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원이 특허자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기술개발은 요원한 것이다.

아. 특허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기능 강화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연구소 등 기술개발관련 기관의 고위층이 특허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부문에서의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기술개발 관련 전 부문에서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1) 교육강화

정부의 경우에 기술개발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하는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65개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공법인체의 교육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수원, 표준협회 연수원)에서 일반과정에는 소양과목으로, 기술개발 관련정책·집행관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과목으로 편성하여 특허제도의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의 경우에 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특허인식제고가 중요하다. 각 조합별 정기모임, 금융기관 주체 중소기업 경영인 모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최고 경영자 모임, 특정연구소의 유망중소기업 모임,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세미나 모임, 무역협회(KOTRA)의 중소기업 세미나 등에서 특허 발명 사례를 발표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소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특허인식 뿐만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특허인식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구원 본연의 임무가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개괄적인 내용보다 더 특허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제 특허연수원에서 주기적으로 관련학회에서의 세미나, 각종모임에서 관련분야의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기술동향에 대한 강의는 매우 유용하고 집중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예, 특허지도 작성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홍보강화

오늘날 기업체에서 특허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은 선진국과의 특허분쟁이 연일 기사화 되면서 부터이다.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특허인식제고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큰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특허관련 기사를 정기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에서 이의 활용을 많이하고 있으나 특허의 중요성에 비하여 가시화 되는 경우가 적다.

(가) 라디오를 통한 홍보강화

교통방송, KBS 라디오 등 기업정보제공 프로그램에 특허제도 부분을 편성하여 특허의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특허제도 내용에는 특허

시책, 특허분쟁, 특허기술정보, 성공사례등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나) TV의 특허관련 프로그램 신설 및 기존프로그램의 홍보강화

현재 “발명교실”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이 있으나 특허제도 인식과는 다르므로 특허제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업경영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 각종 전문신문 협회 등의 정기간행물 활용
각종 학회·협회·단체 기업조합등에 협조요청을 하여 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특허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특허뉴스』발간 배포
특허제도 활용자료를 위한 공식적인 매체로

『특허뉴스』를 발간하여 대대적으로 특허관련시책·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특허정보』誌를 발간하고 있으나 발간주기가 길고(격월간) 배포처도 변리관련 업계에 국한되어 있다. 특허제도는 단순한 일부집단만이 알아야 되는것이 아니라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제도이고 생활화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명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특허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특허뉴스』 발간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마) 각종 캠페인 전개 등 기타
특허주간 설정, 특허제도 활용수기 공모, 특허관련 논문 현상공모, 특허 포스터 공모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상기와 같은 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인적, 물적 준비도 있어야 할 것이다. <계속>

발특9807

특허공보류 원문복사서비스 활용안내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회원여러분의 효율적인 특허정보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 열람실 소장 국내외 산업재산권공보류에 대한 원문복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 대상자료 : 특허청열람실소장 국내외 산업재산권공보류
- ▶ 신청방법 : 직접, 우편 또는 Fax (02-553-9547)
- ▶ 제공방법 : 직접, 우편 또는 Fax
단, 우편 또는 Fax이용 제공시 송료실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열람실(02-553-9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